

「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6년 4월 7일

나. 발 의 자: 김근한·장미경 의원(2인)

다. 찬 성 자: 김낙관·김민성·김영태·김원섭·김재우·김정도·김춘남·
소진혁·이상호·이정희·정지원 의원(11인)

라. 회부일자: 2026년 4월 8일

마. 상정일자: 2026년 4월 16일

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근 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·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2)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~제4조)
- 3)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2)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6. 4. 8. ~ 4. 14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영훈

○ 본 조례안은

-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·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의 활동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여, 보조금 집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 지원 시 안 제6조에서 규정한 ‘중복지원 금지’ 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어 타 법령이나 사업과의 중복 수혜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.
- 또한, 안 제5조제4호의 홍보 및 교류 활동 지원 시에는 단순한 견학이나 교류를 넘어 회원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예산 투입 대비 고도의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한 기획이 요구됨.

- 아울러 안 제5조 제2호와 제3호에 명시된 교육·연구 활동 및 시민 안보의식 개선 사업이 형식적인 강연에 그치지 않고,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